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현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오른쪽 점선은 마은혁 재판관의 빈자리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 강제하지는 않아

### 장기 공백 상태 해소 나서 임명 문제는 정치권으로 넘겨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라고 선언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장기 공백 상태를 직접 해소하려 나섰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문제는 ‘헌재의 권한 바깥’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치권의 몫으로 돌렸다.

◇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 6년마다 반복된 ‘재판관 공석’에 쐬기

헌법재판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하면서 결정문에 법리를 상세히 설명해 제시했다.

헌재는 우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고,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의무임을 선언했다.

헌법 111조 2항은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헌재는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고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마음대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작위(적극적 행위) 의무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헌법·법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최 대행의 행위도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위법하며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그간 여야의 정치 다툼으로 재판관 공석 사태를 여러 번 겪었던 헌재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최소한 국회 선출이 완료된 뒤에는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 ‘임명 강제는 불가’ 선 그어... 민주당·최상목 대행에 ‘쓴소리’도

헌재는 다만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헌재가 대통령에게 직접 명령·강제하거나,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며 사법기관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헌재법에는 헌재가 심판 대상이 된 국가기관 등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해 판단할 수 있고 이미 실행된 처분은 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릴 수 있

다고 정한다.

그러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부작위)에 대해서는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이 그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만 정할 뿐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심판청구 중 ‘직접 임명’ 관련 부분은 각하하면서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대행에게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제 임명 행위는 최 대행의 몫으로 남겨둔 셈이다.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뚜렷한 수단이 헌법에는 없다.

어떠한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형성(발생·변경·소멸)하는 결정은 내릴 수 없다는 것으로, 이 부분 판단에서는 ‘사법적극주의’ 대신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자 헌법상 의무라는 선언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공석을 초래한 정치권을 꼬집기도 했다.

헌재는 “재판관은 임명·선출·지명권자가 누구였는지에 구애됨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며 “피청구인의 주장은 헌재 및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 여 “다수당 독재 용인”...야 “즉시 임명해야”

### 헌재 ‘마은혁 결정’ 엇갈린 반응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행에게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라는 것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불복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헌재는) 결국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침해했지만,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 대행은 본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며 “불복하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 서초구 정계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다”며 “임명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헌법 조항을 권한쟁의심판까지 해서 결국 당연한 답을 받아냈다”며 “한덕수, 최상목 두 대행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지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의 위헌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속죄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67조에 따라 조속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즉각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됨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우원식 의장 “최대행, 헌재 9인체제 복원해야”

###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에 “국회법 따라 일반정족수 적용”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별도의 분회의 의결로 정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탄핵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